쌍촌 엘리체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당 아파트는 9.1 부동산 후속조치에 따른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개정 시행일:2015.12.29.)
- 당 아파트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자율화[주택법 제38조의2(시행:2015.4.1.)]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분양하는 지역으로 분양대금은 사업주체에서 적이 조정한 금액입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5.05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당 아파트는 2016.05.05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규정에 의거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2조8항)'가 적용되어, 당해 지역의 경우 청약가점제 40%를 적용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은「주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당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05)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이와 인접한 전라남도 지역까지 확대 공급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건설 지역인 광주광역시에 2016년 02월 05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05)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자 중에서 만65세이상인 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른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비대상자 포함)에게도 배정 될 수 있음.(당첨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첨자의 동·호수 배정시에만 반영됨,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 적용주택으로「주택법」제41조의2 및「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당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 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사항"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개정(2013.5.31.)으로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청약자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5565(2016.05.0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97번길 14-2(쌍촌동)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7~24층, 7개동, 총 602세대 중 조합분 309세대, 일반공급 2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일반공급 293세대 중 특별공급 세대 포함(일반특별공급 : 2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27세대 포함)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일반공급	1층 우선배정세대	해당동	입주예정시기
민영주택	2016000416-01	73.3745	73.3745	24.2246	97.5991	45.0492	142.6483	33.9758	49	4	4	4	35	2	101동1,2라인 / 106동 1,2라인	'18.8월
	2016000416-02	84.9810 A	84.9810	27.5895	112.5705	52.1752	164.7457	39.3501	103	10	10	10	71	2	103동, 104동, 105동	
	2016000416-03	84.9888 B	84.9888	27.6514	112.6402	52.1801	164.8203	39.3537	75	7	7	7	50	4	101동 4,5라인 / 102동 2,3라인 / 106동 4,5라인 / 107동 2,3라인	
	2016000416-04	84.9977 C	84.9977	27.5742	112.5719	52.1855	164.7574	39.3578	66	6	6	6	47	1	101동 3, 6라인 / 102동 1, 4라인 / 106동 3라인 / 107동 1, 4라인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확장금액 별도] [단위 : ㎡, 원]

주택형(㎡)	층별구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차 계약시	계약금 2차 16.06.25	중도금 1차 16.07.25	2차 16.11.25	3차 17.03.25	4차 17.09.25	5차 18.01.25	6차 18.06.25	잔금(30%) (입주시)	해당동
73.3745	1층	2	76,600,000	181,900,000	258,500,000	10,000,000	15,85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77,550,000	101동1,2라인 106동 1,2라인
	2층	1	76,600,000	187,800,000	264,400,000	10,000,000	1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26,440,000	79,320,000	
	3층	2	76,600,000	196,400,000	273,000,000	10,000,000	1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81,900,000	
	기준층	44	76,600,000	210,800,000	287,400,000	10,000,000	18,74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86,220,000	
84.9810 A	1층	2	88,730,000	215,670,000	304,400,000	10,000,000	20,440,000	30,440,000	30,440,000	30,440,000	30,440,000	30,440,000	30,440,000	91,320,000	104동, 105동
	2층	5	88,730,000	222,470,000	311,200,000	10,000,000	2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93,360,000	
	3층	4	88,730,000	223,570,000	321,300,000	10,000,000	22,130,000	32,130,000	32,130,000	32,130,000	32,130,000	32,130,000	32,130,000	96,390,000	
	기준층	77	88,730,000	249,470,000	338,200,000	10,000,000	23,820,000	33,820,000	33,820,000	33,820,000	33,820,000	33,820,000	33,820,000	101,460,000	
84.9810 A	2층	0	88,730,000	212,770,000	301,500,000	10,000,000	20,15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90,450,000	103동
	3층	2	88,730,000	222,770,000	311,500,000	10,000,000	21,150,000	31,150,000	31,150,000	31,150,000	31,150,000	31,150,000	31,150,000	93,450,000	
	기준층	13	88,730,000	239,270,000	328,000,000	10,000,000	2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98,400,000	
84.9888 B	1층	4	88,740,000	209,760,000	298,500,000	10,000,000	19,850,000	29,850,000	29,850,000	29,850,000	29,850,000	29,850,000	29,850,000	89,550,000	101동 4,5라인 102동 2,3라인 106동 4,5라인 107동 2,3라인
	2층	5	88,740,000	216,260,000	305,000,000	10,000,000	2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91,500,000	
	3층	4	88,740,000	226,260,000	315,000,000	10,000,000	2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94,500,000	
	기준층	62	88,740,000	242,960,000	331,700,000	10,000,000	23,170,000	33,170,000	33,170,000	33,170,000	33,170,000	33,170,000	33,170,000	99,510,000	
84.9977 C	1층	0	88,750,000	212,650,000	301,400,000	10,000,000	20,140,000	30,140,000	30,140,000	30,140,000	30,140,000	30,140,000	30,140,000	90,420,000	101동 6라인 102동 4라인 107동 4라인
	2층	2	88,750,000	219,250,000	308,000,000	10,000,000	2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92,400,000	
	3층	1	88,750,000	229,350,000	318,100,000	10,000,000	21,810,000	31,810,000	31,810,000	31,810,000	31,810,000	31,810,000	31,810,000	95,430,000	
	기준층	26	88,750,000	246,050,000	334,800,000	10,000,000	23,480,000	33,480,000	33,480,000	33,480,000	33,480,000	33,480,000	33,480,000	100,440,000	
84.9977 C	1층	1	88,750,000	203,250,000	292,000,000	10,000,000	1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87,600,000	101동 3라인 102동 1라인 106동 3라인 107동 1라인
	2층	3	88,750,000	209,750,000	298,500,000	10,000,000	19,850,000	29,850,000	29,850,000	29,850,000	29,850,000	29,850,000	29,850,000	89,550,000	
	3층	1	88,750,000	219,250,000	308,000,000	10,000,000	2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92,400,000	
	기준층	32	88,750,000	236,050,000	324,800,000	10,000,000	22,480,000	32,480,000	32,480,000	32,480,000	32,480,000	32,480,000	32,480,000	97,44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사항
- 주택형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셔서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청약당첨자 분양계약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임.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가 정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활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당사에서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개별로 체결하여야 함(중도금대출은 개인 대출이므로 개인신용에따라 다를수 있으며, 취급수수료 등은 개인이 부담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 전일까지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분양대금계좌내 한도내에서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의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 · 시공사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3.5%의 할인율(선납일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본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면적합산시 소수점4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아파트 전체 대지지분과 세대당 대지지분의 합계 지분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101동 101호에 가산함.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일반특별(국가유공자 · 장애인 · 철거주택 소유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장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단,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2016.02.05.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자가 우선이며, 미달시 기타지역(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배정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8호부터 제6호, 제8호(제35조 제 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음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항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주택공급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구분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광주광역시)	기타 시 · 군 지역(전라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일반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 · 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5항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1층 주택을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자인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특별공급 1회 제한 및 예외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한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 사업주체가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36조 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사업주체가 제35조에서 제46조 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사업주체가 제47조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처리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 외 주택소유 여부에 대하여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여부 판단 우선함 (통계청 주택소유 확인)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분의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동호추첨 : 특별공급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 결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구분	73.3745	84.9810 A	84.9888 B	84.9977 C	계
일반 특별공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등)	4	10	7	6	2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	10	7	6	27
신혼부부 특별공급	4	10	7	6	27
합계	12	30	21	18	81

-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분(단,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청약통장 필요없음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박사학위 취득 영구 귀국자, 우수선수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1)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 · 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5)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의한 북한이탈주민
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납북 피해자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9) 「공무원연금법」 및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 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10)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 귀국자에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기술인으로서 입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
11)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 ·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12)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 ·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개발 및 활성화 및 경제력 제고 나. 외국인투자 촉진 다. 전통산업의 보존과 관리
14)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이내인 자로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제순위에 해당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서 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①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를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함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이상	5	청약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와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청약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자
무주택기간(4)	20	청약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청약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청약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동일 순위에서경쟁이 있을 시에는 광주광역시에 2016.02.05.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자가 우선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는 입주자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②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③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201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분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3인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16,665원 이하	5,393,154원 이하	5,475,4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779,990원 이하	6,471,780원 이하	6,570,480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475,403원) + {1인당 평균소득(263,821원)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자인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으로 산정하되 월평균소득의 증빙은 아래 〈표〉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의 과세대상금액에 근무월수의 기간을 적용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로 인정되나, 동일순위 안에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동일 순위에서경쟁이 있을 시에는 광주광역시에 2016.02.05.이전부터 계속 거주한자가 우선함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KB부동산 ▶주택청약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APT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6.05.05.)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2016.02.05.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자가 우선이며, 미달시 기타지역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전라남도) 에 배정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자인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하며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구분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기타 시 · 군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09.01.)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	•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가점제 적용(가점제 40%, 추첨제 60%)하여 공급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2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1) 일반 / 다자녀 / 신혼부부 : 해당 청약 신청일에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공통
  (1) 층별 · 동별 · 호별 · 향별 구분없이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로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함[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3.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
4.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5.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에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판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수도권인 경우 1억3천만원, 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된다.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 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금액	신청금 납부 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 인터넷 청약 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 전 계좌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 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6.05.20) 이후부터 평일(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분	환불장소	비고
인터넷 신청시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은행창구 접수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 방문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청약시 환불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함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위임장

Ⅲ.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비고
특별공급	일반(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2016.05.11.(수)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사업주체 견본주택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5(금호동, 서진빌딩 1층)	
일반공급	1순위	• 2016.05.12.(목) 08:00~17:30	• 인터넷 신청	•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2순위	• 2016.05.13.(금) 08:00~17:30		• 2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6개)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에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O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O		신분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 · 장애인 · 철거민 제외)
일반 특별공급	O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의 경우 필히 관련서류 첨부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O	주민등록표초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으로 대체 불가
	O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제출)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이 배제되며 당첨자는 상기 구비서류를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표)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Ⅳ.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비고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일시 : 2016.05.11.(수) 17:00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게재	• 일시 : 2016. 05.19 (목)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일시 – 2016.05.24.(화)~2016.05.26.(목) 10:00~16:00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5, (금호동, 서진빌딩 1층)	
	다자녀/신혼부부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16.05.19.(목)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2순위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구분		국민은행(舊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당첨사실 조회 → 인터넷청약(개인고객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조회
	이용기간	2016. 05. 19 ~ 2016. 05. 28 (발표 후 10일 간 게시)	
ARS	이용방법	•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 전국금융공동망(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2016. 05. 19 ~ 2016. 05. 28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당첨자	• 청약신청 시 SMS 당첨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신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 2016. 05. 19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 · 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건설 지역인 광주광역시에 2016년 02월 05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하여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정당 당첨자 2016.05.24.(화) ~ 2016.05.26.(목) (3일간) / 평일 10:00~16:00
- 계약체결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계약금 납입은 아래 기재된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필히 기재 요망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를 재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10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취소됨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미체결시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580–107–002834	코리아신탁㈜	· 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성명 필히 기재요망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안내
- 납부시기 :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참조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바람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은행 본 · 지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 됨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공통		O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O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O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O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특별공급	일반/다자녀		O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신혼부부	O		• 혼인관계증명서
			O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O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O	• 주민등록초본(직계존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1.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2.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3.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4.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 도용,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5.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6.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미입주 등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7.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 계좌는 부활되지 않음 (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9.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10.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11.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도시주택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해야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Ⅴ. 발코니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중도금 5회차시	잔금(80%) 입주지정일
84.9810 A	10,000,000	1,000,000	1,000,000	8,000,000
84.9888 B	10,000,000	1,000,000	1,000,000	8,000,000
84.9977 C	10,000,000	1,000,000	1,000,000	8,000,000
73.3745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137–107–203990	(주)서진종합건설	• 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성명 필히 기재요망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2010.2.18 개정 시행)
- 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화마루(걸레받이 포함))거실, 주방 및 식당, 침실 (타일)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바닥 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 벽, 천장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면처리 천장: (천장틀,석고보드), 커텐박스
3)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4)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 석재(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 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5) 주방가구	주방가구: 상,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쿡탑	설비배관, 렌지후드(자동식소화기 설치관련전기, 통신 배관/ 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6) 창호	창호(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문의 가틀 및 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 도어
7) 가구류 및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가구 등 가구류일체, 자동건조대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84.9810 A	84.9888 B	84.9977 C	73.3745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25,075,078	25,090,604	25,075,390	21,374,202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 품질관리 · 시공관리 · 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 지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이며 입주지정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바닥재의 경우 내부 문턱(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Ⅵ.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전용면적 85m2 이하의 단독주택
    ③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m2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1억 3천만원(수도권) 또는 8천만원(비수도권)이하인 1주택(소형 · 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현재 :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년9월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해당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장 제4절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착오기재 소명 여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착오기재를 소명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가점제의 가점항목 점수를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음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12.29.)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야 정해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②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자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만일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모두 무효 처리함
- 이중당첨 처리기준 : 동일계좌로 2주택이상 청약 시 먼저 당첨된 주택이 유효하며, 다른 당첨된 주택은 향후 당첨취소 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평형] 표시 등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공급면적으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가는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쟁 및 정부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보증목적물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다로그, 조감도, 전단 안내문 등)에 표시된 외부 조경, 녹지, 구조물 등은 분양승인도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내 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기타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대시설 및 조경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시설물 배치, 디자인, 색상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체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이 설치되며 실외기실 및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홈통, 드레인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외관 및 동 배치, 색채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및 세대 내 마감자재는 자재 수급 및 품질 등 현장 사정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인접 동 및 부대시설, 옹벽 등에 의해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저층부 및 발코니 외부 등에 설치되는 실외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환기구, 조경시설물 등이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최상층 세대 및 일부 세대는 옥탑 구조물,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이 설치되어 조망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개별 인테리어 공사 및 발코니 개별 확장 시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주택 및 관계 법령에 따름 · 인터넷 청약 및 청약 관련 상세 내용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단지외부여건
- 본 아파트 동 · 남측의 도로와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북측에 병원과 병원주차장이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남 · 서측에 분마파트 와 인접하여 향후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주변의 개설도로의 도로, 도로상태, 차량통행방법(일방통행여부), 보행자전용도로 및 인접 시설 등 향후 시 도시계획 등에 의해 도로계획이 진행되는 경우 주변 시설 등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그 외 카탈로그와 모형도 등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의 개설유무는 해당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으로 계획 구역상 구획된 도로이므로 본 아파트와는 무관한 사항임

- 단지내부여건
- 단지전면부의 주출입구는 본 사업부지 남측 12m 도로에서 진입 가능함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등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엘리베이터(승강기), 전기 · 수도 · 급수 등 차단 및 배출장치 등 단지 전체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련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인허가 과정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 외부 조경 및 조명시설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 등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 외부 포장 및 옹벽의 높이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배기구 등이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냄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디자인
1.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으로 시공될
3.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4. 각 면적별 평형 및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5.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 도래인 등 선홈통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6. 전기, 설비 마감재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8.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 및 외부창호 재료 등이 다를 수 있음
9.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10.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음
11.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② 고정형 가구 상 ·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강화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12.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13.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4.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15.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16.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17.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대/규격
1.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1.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4.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시공에서 제외됨
■ 환경권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2.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3.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4.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5. 단지의 경사지대로 인해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 · 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6.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외부환경/디자인
1. 단지내 조경,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2.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3.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5.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경계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토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변환경
1.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중 계획도로 /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
1.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채,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2.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4.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사업주체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5. 커뮤니티 시설 공간(지하1층) 인근에 관리사무소 설치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2개소 등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기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 입주 예정일 : 2018년 8월중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소음 예측평가기관 및 평가결과 *평가업체 : 선일기술산업㈜ *등록번호 : 제금천 – 1호, 2호
- 평가결과
  – 28도로에 면한 예측지점에서는 5층 이하 부분 및 6층 이상부분이 실외소음도 기준 "65dB(A)미만"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5층 이하 부분은 아래도면과 같이 부지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공동주택 실외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6층이상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창호를 22T 이중창호(22T + 22T) 로 설치시 실내소음도 기준 45db(A)이하를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효율 기자재	적용	판형 열교환기, 급수펌프(부스타펌프), 고효율 변압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세대내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단위세대내 현관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관리실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단위세대내 각 실
절수설비	적용	단위세대내 수전류(샤워, 세면기, 양변기, 싱크수전)

▣ 정보통신 관련하여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 예비인증:
–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갖춘 건물임을 인증 받은 것이며, 인터넷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 가입이 필요합니다.
- 대지비 감정 평가금액 (택지비 가산내용 미포함) [금액단위: 원]

(주)태평양 감정평가 법인	(주)경일 감정평가 법인	평균
₩ 16,605,425,800	₩ 16,681,178,700	₩ 16,643,302,250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 · 통신감리
회사명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주)서광이엔스	(주)엔탑엔지니어링
감리금액	₩1,784,476,067원	₩471,650,354원	₩435,000,000원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16–101–0004100 호	₩ 66,096,66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1조제4호)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①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③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률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④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3조) 보증회사는 주채무자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책임집니다. (보증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공급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합니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함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약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 아닌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등록번호
사업주체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96 2층(내방동)	410–82–13784
시공업체	(주)서진종합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5 (금호동, 서진빌딩 3층)	135–81–16336

- 견본주택 전화번호 : 062–573–4400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5 1층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시공회사로 문의 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련 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쌍촌 엘리체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5 1층

73㎡ · 84㎡
총 602세대

062)573-4400

모델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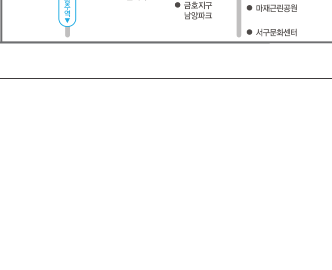

■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주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본 지면상의 지역도 및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입니다 ■ 분양용도 : 공동주택 ■ 연면적 : 98,717.5186㎡
■ 시행 : 쌍촌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시공 : (주)서진종합건설